

2021년도 제2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8. 1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396건(안건번호 제2021-100817호~10289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00817호, 100818호(순번 1번~2번)는 오픈마켓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간접증거를 통하여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00819호(순번 3번)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임베디드 링크를 제공한 사안으로, 링크 제공을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 보기 충분한 점, 그에 반하여 인용 내지 공정이용으로 불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00820호~100822호(순번 4번~6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예고편을 전송한 사안으로, 인터넷을 통한 확산을 예정하고 홍보 목적으로 제작 및 공개하는 예고편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어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00823호~100842호(순번 7번~26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다수의 일본 및 미국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00843호(순번 27번)는 불법복제물에 우리말 번역을 더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 중인 사안으로, 영리성을 가진 행위임이 분명한 점, 저작물 전체 분량을 지속적으로 무단 이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00844호~100866호(순번 28~50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32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67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1-10462호~1114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67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39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번은 민원인 2명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으로, 오픈마켓의 이용자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을 판매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2

건임.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제출 자료는 검토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가정용'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기관용'을 제공 중인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백신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해야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중인 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정품 가격의 약 1/20의 가격에 판매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복제물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 순번의 불법복제물 제공 방식이 다른 바, 이하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순번 1번은 ○○○○ ○○ 이용자가 “○○ ○○○○ ○○ ○○○ ○○ ○○○ ○○ ○○○”이라는 제목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을 판매 중인 사안으로,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주문이 확인된 즉시 이메일로 불법복제물 파일 및 설치 방법 등을 발송하는 것으로 보임.

이메일을 통하여 동일 저작물을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행위가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음.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근거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본문, 판매자가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 게시물에 달린 수개의 댓글 등의 간접증거로 미루어 보아,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오로지 대가를 받고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바,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저작권 침해 정보'라 함)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다음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순번 2번은 ○○ 판매자가 “○○ ○○○○○○ ○○ ○○○○○○ ○○ ○○○ ○ ○○○○”이라는 제목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이메일로 불법복제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와 설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음. 순번 2번은 앞서 검토한 순번 1번과 달리 메일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파일 자체를 직접 전송하고 있지는 아니함.

형식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의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인터넷 주소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인터넷상의 링크는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서 여러 문서와 파

일을 비롯하여 다른 웹페이지까지 상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클릭 행위에 의하여 정보가 전송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아졌으며, 이용자로서는 클릭 행위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외부 웹페이지로부터 전송되는 것임을 인식하기조차 어려움.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의 링크는 웹페이지 간 상호 연결의 기능을 넘어,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판매자의 메일 내용에 따르면 “○○○○○○ ○○○○○○.”라고 안내하고 있어, 판매자가 불법복제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직접 업로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고, 따라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간접증거를 통한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의 인정 및 시정권고의 대상으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순번 1번에서 살핀바와 동일함.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해당 불법복제물을 구매하는 경우, 시리얼 넘버도 함께 제공되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순번 1번의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품 인증이 되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며, 순번 2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메일로 시리얼 넘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D 위원: 과거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가결 의견임.
- A, B, C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미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에 게시된 다큐멘터리 영화 '○○ ○○○'을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건임.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전편 영상 및 예고편 2편의 임베디드 링크, 스크린샷,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영화 소개글로 구성되어 있음. 저작권 침해 및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영화의 소개글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물의 극히 일부만을 감상평,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위 사안들과 달리 공중으로 하여금 영화 전체를 관람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약 132분 가량의 영화 전체를 이용하였으며, 그와 같이 전체 분량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합법 시장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 내지는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권리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시정권고 대상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앞서 살핀바와 같이 임베디드 링크의 제공 행위는 전송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 한편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의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소재한 링크게시물의 경우 해당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소재한 경우에는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원천게시물의 서버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링크게시물인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게시판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영화 전편을 게시한 본 안건과 달리, 다른 게시물들은 관리자의 공식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고편 영상만 게시하고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6번은 1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예고편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9건임.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공식 예고편 전체 분량인 약 32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의 예고편은 관리자에 의하여 홍보 목적으로 제공된 영상으로, 관리자의 유튜브 채널,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등 포털사의 영화 전문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함. 이용자는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영상을 합법적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하여 제공된 영상을 별도로 다운로드 후 업로드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불 소지도 다소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동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권리자가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예고편으로, 마케팅 수단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확산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영화의 홍보 목적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순번 4번 및 5번의 경우 합법 시장에서 번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자막을 달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니아층이 순수한 취미로서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게시물 내지 블로그에 영리 목적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권리자에 의하여 오로지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어 공중에 공개된 예고편 영상이 별도의 합법 시장을 형성하는지 여부 및 합법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예고편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특별히 고려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본 안전은 일반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공정이용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어 부결 의견임.

- A, B, C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6번은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번~26번은 1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에서 다수의 일본 및 미국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수는 32건임.

(순번 7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나, (순번 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된 상태임. 순번 7번~21번까지 동일 블로그의 게시물로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블로그 이용자에 의하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2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사안임.

(순번 2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시즌1 13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겠음.

게시자는 '○○'로, 심의대상 게시물 이미지에서 “○○○○ ○○○○”라는 워터마크가 확인되는 점, 블로그 소개글에서 자료 제공자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자는 '○○'라는 닉네임의 팀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받아 우리말 번역 및 게시 중인 것으로 추측됨.

또한 게시물 하단에 광고 링크가 게재된 점 및 블로그의 내용으로 보아, 게시자는 불법복제물 전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게시판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더불어 블로그 내 공지에도 따르면, 권리자의 저작권 단속을 피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전문적인 불법복제·전송자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는 거의 없음. 더불어, 게시자는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의 필요성인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7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8번~50번은 11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출판 및 만화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23건임.

(순번 28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394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100원에 판매 중임.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8번~50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1번~208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4,32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Next Level'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7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Next Level'을 1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1년 08월 02일 TOP 100"이라는 이름의 zip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 100곡 중 1곡임. 해당 저작물은 2021. 5. 17.에 발매한 댄스 음악으로,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방송 '고독한 미식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65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고독한 미식가'를 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시즌9 1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일본 TV도쿄에서 2021. 7. 9.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에 있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1,100원에 대여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51번~208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1번~208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00820호~100822호(순번 4번~6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00817호~100819호(순번 1번~3번), 안전번호 제2021-100823호~102899호(순번 7번~208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7쪽부터 2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제 제2021-10462호~11140호(순번 1~679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25.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